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

제 1 조 (목적)

본 기준 및 절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의하여 하인즈코리아투자자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수수료 부과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여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규정 시행세칙 및 기타 법령(이하 “관련 법령”이라고 한다)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수수료”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자산 서비스에 대해 사전에 약속된 수수료로 부과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서 계약자산의 운용성과와 관계없이 부과하는 일종의 관리수수료를 의미한다.
2. “성과수수료”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준 종료일에 계약자산을 평가하여 계약체결시점에 투자자와 약정된 성과수수료 부과기준을 충족한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3. “기준지표 등”이란 성과수수료를 수령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목표수익률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지표 또는 회사와 투자자간 합의에 의하여 정한 기준수익률을 의미한다.

제 4 조 (수수료 부과기준)

- ① 수수료는 투자자문 계약 및 자문대상자산의 특성, 투자자문 자산의 규모, 서비스 제공 수준 등 투자자문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 ② 회사는 수수료 부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 조 (수수료 체계)

- ① 투자자는 회사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수수료 지급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회사의 수수료 정책을 기본으로 투자자산

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기본수수료만 지급
2.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지급

② 회사는 투자자문계약이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지되는 경우 투자자와 정한 바에 따라 중도해지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 6 조 (부과 절차)

① 수수료는 관련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투자자문계약서에 수수료 계산방법, 수수료 계산기간 및 수수료 지급시기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

②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 관련법령에서 수수료에 대해 정하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수수료를 추가로 받지 아니한다.

제 7 조 (수수료의 설명 의무)

회사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47조 제1항 및 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 8 조 (투자광고)

회사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57조제2항 및 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따라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9 조 (공시)

회사는 법 제58조 제1항에 의거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 10 조 (협회에 대한 통보)

회사는 법 제58조 제3항에 의거 이 기준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전에 결정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이 기준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